| 고용노동부 | 보도설명자료 | |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---|
| 배포일시 | 2021. 10. 20.(수) / 총 2쪽 | | 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 과 장 허윤선<br>사무관 최해리 | 044-202-7481<br>044-202-7482 |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을 통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.

## 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0.20.(수) 파이낸셜뉴스 "하루 8시간 일하고 한달에 고작 10만원… '홀대 받는' 장애인"

> ㅇ 사업주의 근무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적용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…"근로능력평가는 평가사항, 방법 등을 모두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다"
>
> ㅇ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원…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6만 3441원이다.

## 2. 설명내용

□ **최저임금 적용제외**는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작업능력평가**에서 **비교대상 근로자(기준근로자) 작업능력의 70% 미만**으로 평가받은 **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가 여부가 결정**됨

ㅇ 작업능력평가는 **사업주 임의가 아닌** 공단 소속 **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가 지침·매뉴얼***을 **기준으로 실시**하며,

*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처리 지침,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 매뉴얼



ㅇ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**기준근로자 강화**(1명 → 사업주 지정 1명, 공단 지정 1명), **평가 횟수 확대**(1회 → 2회) 등 **절차 및 방법을 기 개선**하였음

□ 기사에서 인용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**월 평균 임금**은 **월 근로시간 등의 고려 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**으로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□ 한편,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**일반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**들의 **일자리 보호**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,

ㅇ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인 **'직업재활시설'*** **근로 장애인을 중심**으로 **필요 최소한으로 운영**되고 있음

*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(장애인복지법 제58조)

□ 다만, 그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, 정부는 **장애계·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**해왔으며*,

*「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TF」 운영 ('18~'19년)

ㅇ 급격한 제도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**제도의 폐지보다는 전환지원 방안을 모색**하였음

ㅇ 이에,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**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**하는 **'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프로그램'을 신설**('20) 및 운영하고 있음

□ 향후,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**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질적 감소를 지속 추진**하고, **사업 성과 등을 보아** 장애인 근로자 저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**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**할 계획임